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5. 7. 31.>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대장의 분리·결합신청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발급일		처리기간		7일	
소유자		성명(명칭)							
		주민(법인)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				전화번호	
		주소							
구 분		(변경) 전 내용		(변경) 후 내용		사유			
분리	대지위치 (건축물명칭)								
결합	대지위치 (건축물명칭)								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·결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		
신청인 제출서류		1. 건축물현황도(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현황측량성과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					수수료 없음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	토지 등기사항증명서							